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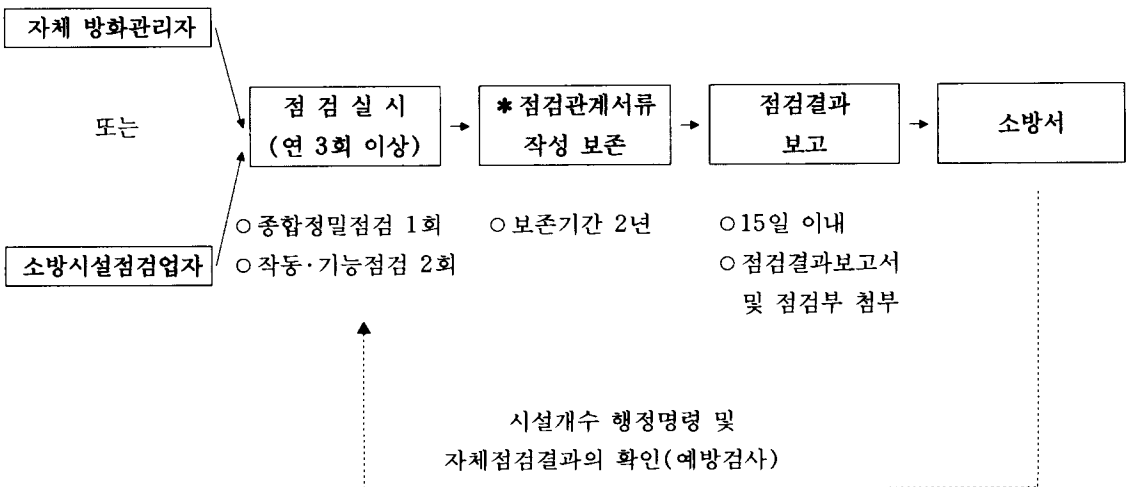
소방법령 개정(법 제32조)에 따라 1993. 7. 1로부터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시·도지사에 등록된 소방시설 점검업자에 위탁하여 점검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여기에서는 소방법규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업무처리규정(내무부 훈령 : 93. 6. 11)에 따른 소방시설 자체점검 방법 및 자체점검과 소방검사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의 개요

소방시설의 자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중 제도는 일정 자격자가 법규에서 규정하는 점검기구를 사용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통보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소방시설 점검업자로 하여금 점검을 실시케하고, 업자는 점검결과를 소방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 점검관계서류 : 소방시설 점검부, 점검결과 보고서, 자체점검 기록부

2. 자체점검 대상별 점검자 및 점검회수

구 분	대 상	점검자 자격	점검회수
1 급 방화관리 대 상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면적 10,000㎡ 이상(공동주택 제외) ○지층, 무창층 또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0㎡이상(공동주택 제외) ○1개층의 바닥면적 5,000㎡ 이상(공동주택 제외)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 ○자체 소방대를 두는 위험물 제조소 등 ○가연성가스 500톤 이상 저장, 취급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화관리자 또는 소방 시설 점검업체의 소방 시설관리사 ※ 방화관리자 자격 요건 ○소방설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1급 (2년 이상 실무경력자) ○소방공무원 (5년 이상 경력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정밀점검 연 1회 이상 ○작동기능점검 연 2회 이상
2 급 방화관리 대 상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소방 대상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소방 대상물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세대 이상 또는 - 승강기 설치 또는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위험물 제조소 등 ○가연성가스 100톤 이상 저장, 취급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화관리자 또는 소방 시설 점검업체의 소방 시설관리사 ※ 방화관리자 자격 요건 ○방화관리업무 강습 수료자 ○소방설비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축기사, 전기기사 ○위험물 취급 기능사 ○소방공무원(1년 이상 경력자) 등 	상 동
기 타 방화관리 대 상 물	○1, 2급 방화관리 대상물 외의 특수장소	○관계인 또는 소방시설 관리사	○작동 기능점검 연 2회 이상

* 점검 실시 시기는 연중 균등한 간격이 되도록 하고,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규정된 서식에 기록하여야 함.

3. 자체점검의 점검서식, 점검기구 및 점검 방법 등

자체점검 서식은 종합정밀점검 서식과 작동기능점검 서식으로 구분되며, 서식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업무처리규정(내무부 훈령)에서 정하고 있다.

1급 및 2급 방화관리 대상물의 자체점검시에는 설치된 소방시설 종류별로 소방법 시행 규칙 별표 3에서 정한 소방시설별 점검기구를 확보하여 점검하거나 이를 대여받아 점검할 수 있다.

또한, 점검자가 점검한 소방시설은 주요부분에 봉인 또는 검인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인, 봉인 방법에 대하여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이

러한 조치는 검사당시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고, 점검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점검업자에게 위탁할 경우의 점검 수수료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되 엔지니어링 진흥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대가 기준을 참고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4. 자체점검과 소방검사와의 관계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과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특수장소의 방화관리자 및 시설주의 책임하에 자율적 관리토록 하였으나, 기타 화재예방을 위한 확인검사(예방검사)와 화재의 경계. 진압을 위한 자료조사(경방조사)는 종전과 같이 소방관서에서 1급방화관리 대상물은 연 2회, 기타 방화관리 대상물은 연 1회 정도로 계속 수행토록 규

정하고 있다.

5. 자체점검과 당 협회 안전점검과의 관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동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건물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는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안전점검은 소방시설 점검뿐만 아니라 화재예방 전반에 관한 종합정밀점검과 소화설비 할인검사 등 보험요율 책정에 필요한 제반 자료조사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당 협회에서는 특수건물에서의 소방시설 점검 중복으로 인한 소유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안전점검시 소방시설 자체점검 중 종합정밀점검을 무료 대행하는 방안 등을 계획중에 있다.

